

수도박물관 기획전시 공간 조성 용역 세부지침서

1. 사 업 명 : 수도박물관 기획전시 공간 조성 용역

2. 사업목적

- 북청 물장수의 일상을 따라가며 근대 이전 서울의 물 문화와 물 공급 체계, 상수도 도입 이후의 변화를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 조성
- 유물·사진·문헌 등 다양한 전시자료와 몰입감 있는 공간 연출을 통해 전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관람객의 이해와 공감 제고

3. 사업개요

- 위 치 :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수도박물관 별관(263㎡)
- 전 시 명 : 북청 물장수의 하루(안)
- 전시기간 : 2026. 10. 1.(목) ~ 2026. 10. 31.(토)
- 전시자료 : 물장수 관련 문헌자료 및 실물자료, 뚝도수원지 관련 유물, 문학자료, 고신문, 사진자료, 지도, 각종 사료 등
- 전시구성
 - PART 1 : 해 뜨기 전, 물장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.
 - PART 2 : 물장수의 시대에서 근대 상수도의 시대로
 - PART 3 : 우리 삶 속의 물장수
 - PART 4 : 아리수 영상존
 - PART 5 : 아리수 체험존

4. 사업기간 :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. 10. 1.(목)까지

- 발주기관의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경우 전시기간이 변경(연기)될 수 있다.
- 전시 철거는 전시 종료 후 8일 이내가 원칙이나 별관 전시물의 상설 전시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철거 및 기존 전시물의 복구는 생략한다.
- ※ 단,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2개월

5. 사업의 범위 및 기간

가. 본 사업은 서울아리수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의 ‘수도박물관 기획전시 공간 조성 용역’에 적용되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.

- 1) 전시 기획안에 따른 전시 설계
- 2) 기존 전시물 철거
- 3) 전시실 내부 구조물 제작·설치
- 4) 유물 받침대 제작·설치
- 5) 전시 그래픽 제작·설치(텍스트/이미지 패널, 네임택 포함)
- 6) 전시 매체 제작·설치
- 7)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

나. 본 사업은 세부지침서에 따른 일체의 전시공간 연출을 그 범위로 하며, 이에 수반되는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.

다. 본 사업은 성과품 납품 후 검수 완료를 끝으로 종료하며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이 미비한 부분의 수정이나 자료 제출 요구 시 계약 상대방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.

라.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지침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.

마. 본 사업의 시행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1일(목)까지로 하며,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- 1)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
- 2)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

6. 기본지침

가. 기본방향

- 1) 「북청 물장수의 하루」는 물장수의 생업과 일상을 통해 서울의 물 공급 체계와 시민의 생활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전시공간을 연출하고자 하며,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결합한 복합 전시 연출 방법(그래픽, 모형, 조명, 체험, 소리 등)을 적용해 전시공간을 조성한다.
- 2) 기획전 성격에 맞는 독창적인 전시 연출을 구성하고 품격에 맞는 수준 높은 전시가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3) 각 전시공간이 변화된 구성과 신선한 전시 연출로 재미있고 실감나는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한다.
- 4) 전시시설물(받침대 포함)을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 및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5) 전시시설물 설치 시 박물관 전시실의 기본 구조가 훼손되지 않는 공법을 사용한다.
- 6) 각종 전시 자재는 포름알데히드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다.

나. 일반지침

- 1) 기획전 개최 목적과 요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주어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.
- 2)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연출안을 충분히 숙지한 뒤 이를 기반으로 연출 계획을 수립하되,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전시를 구현하도록 한다.

- 3) 전시물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·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.
- 4) 연출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는 스토리라인에 맞도록 적절하게 모형과 영상을 활용하여야 한다.
- 5) 공공문화시설로서 고령자 및 장애인의 편익과 안전성을 도모하는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.
- 6) 청소년 단체 관람객의 전시실 관람 시 안정성과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시 연출이 되어야 한다.
- 7) 전시물은 예술성, 창작성, 통일성, 기능성을 충족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.
- 8) 기존 각종 설비(전기, 통신, 방범 등)의 목적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.

7. 세부지침

가. 전시 공간

1) 공간구성

- 전시 기획안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간을 설계하고 효율적인 전시 공간을 구성한다.
- 전시실 관람 동선은 원활하고 상호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.
- 전시 성격(전시 소주제)에 맞추어 전시 그래픽, 전시 보조물을 계획하며, 필요한 경우 상징 조형물(모형) 등을 통해 전시실 내 공간 분위기를 조성한다.
- 전시 주제에 부합하는 전시실 인테리어를 계획해야 한다.
- 공간은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다채로운 공간으로 구성한다.

2) 색채구성

- 전시 소주제에 맞추어 차별성이 있는 색채를 구성하되, 전반적인 색채는 통일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해야 한다.

나. 전시물

1) 구조물

- 전시실 벽, 바닥, 전시 칸막이, 진열장 설치대 등의 마감재료 및 디자인은 주변 시설 및 조명과의 조화, 유물의 안정적 거치 및 보존, 유지 관리의 용이성, 변질 방지, 관람객 안전성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, 수시로 채색과 보수 등 빈번한 보수나 재도장을 필요로 하는 설계는 지양한다.

2) 진열장

- 신규 진열장 계획 시 전시 효과와 전시물 보호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진열장을 설계하되, 시공성·경제성을 고려하고 기존 진열장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제작한다.

3) 전시 보조자료(전시대, 받침대, 유물 설명 카드 등) 설치

- 전시 연출에 필요한 받침대, 전시대, 유물 설명 카드 등과 같은 전시 보조자료는 전시 소주제의 특성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디자인되어야 하며, 전체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연출하여야 한다.
- 유물 받침대와 패널, 설명 카드, 배너 등은 시인성과 유지관리의 용이성, 내구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질 및 형태, 색채 등이 설계되어야 한다.
- 유물 보존 및 관람환경을 고려하여 전시 자재는 포름알데히드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다.

4) 모형 전시물

- 효과적인 연출을 위해 스토리라인에 따라 전시실 내·외부 모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.

다. 전시실 제작·설치

- 1) 전시실의 모든 구조물 설치의 사업 기간 내에 완성되어야 한다.
- 2) 구조물 제작·설치 시 안전 관리 및 사후관리에 힘쓰고, 재난 등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전시공간 조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.

- 3) 전시실 설치 및 시공의 문제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경우, 책임 소재를 구분하여 원상복구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.

라. 전시실 철거

- 1) 전시 종료 후 8일 이내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관 전시물을 상설전시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철거 및 기존 전시물의 복구 공사는 생략한다.

※ 단,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2개월

8. 기타 유의사항

가. 일반사항

- 1) 본 사업의 성실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하며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한다.
- 2) 전시 연출에 필요한 재료 및 특수 재료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우수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.
- 3) 전시물의 제작 · 설치에 있어 향후 부품 교체 · 보수 · 유지관리 등이 용이하도록 이를 고려하여 제작 · 설치하여야 한다.
- 4)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 · 형사,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책임소재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.

나. 사업 기간의 조정

- 1) 사업 기간(보고, 성과물 제출 기간)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.
단,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 일정이 조정된 경우에는 사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다.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

- 1)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,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.

-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
-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, 과실 또는 무성의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사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
-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사업을 진행한 때
- 기타 계약조건을 사전 협의 없이 위반한 때
- 기타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

라. 안전관리

- 1)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2) 관련 시설물은 관람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·설치하여야 한다.
- 3) 모든 자재의 사용은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고 「산업표준화법」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.
[이에, 공사용 자재의 규격은 한국산업표준(KS), (Q), (전), (검), (품) 표시 규격 순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]
- 4) 계약상대자의 사업 수행으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관련 보험 가입 등의 안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5)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안전 관리 전담 요원을 상주 근무하도록 하여 시설물 점검 및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마. 보안사항

- 1)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,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.

- 2) 본 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.

바. 기타사항

- 1) 용역 수행 시 수집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,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유포할 수 없다.
- 2)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제3자의 작품 표절 및 인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민·형사상의 분쟁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.
- 3)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의 내용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 -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사정상 계획의 변경·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4) 사업 수행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5) 본 세부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한다.